

2026년 제1회 시흥시 청원경찰 신규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제1회 시흥시 청원경찰 신규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시 흥 시 장

1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구 분	분 야	선발예정인원	담당직무	근무예정부서
청원경찰	청원경찰	6명 (여자 2명, 남자 4명)	○ 청사 보안, 청사 출입 통제 및 순찰 ○ 집단민원 대처, 청사 내·외 질서유지 ○ 시설물 훼손행위 및 불법행위 계도 ○ 민원 안내 등 대민업무	본청 및 외청(사업소), 행정복지센터 등

※ 근무 부서는 추후 결정하며, 원활한 인력운영 및 「시흥시 공무원직 관리규정」, 「청원경찰법」등에 따라 근로
기간 중 근무부서(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 시흥시 공고 제2026-2729호 「2026년 제1회 시흥시 공무원직 신규 채용시험」과 중복접수 불가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이며 60세 미만인 자

※ 「청원경찰법」제10조의6 정년: 60세

나. 거주지제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거주지 요건확인: “주민등록초본” 기준

- ① 공고일 전일부터(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공고일 이전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
이어야 함

다. 응시결격사유 등: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을 기준으로 아래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 시흥시 공무원 관리 규정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청원경찰법 >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필수자격요건(기준일: 공고일)

구 분	필수 자격증 및 진단서
청원경찰	※ 아래 두 가지 증빙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함 1. 무도(무술)단증 - 발급인정단체(경찰공무원 채용시험(경찰청 공고) 기준에 따름)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하며(p.8),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 시력검사 진단서(안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혹은 확인서)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신체조건)를 충족하는 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원서접수일 제출서류와 함께 자격(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

3

채용절차

구 분	절 차
청원경찰	서류심사(자격) + 인성검사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면접시험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합격기준: 응시자격(공통요건+필수자격요건) 충족 시 합격자로 결정

나. 인성검사

○ 검사일시: (예정) 2026. 11. 6.(금) 13:30

○ 시험장소: 추후 별도공고

※ 인성검사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 모든 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필기시험

○ 시험일시: (예정) 2026. 11. 6.(금) 15:00

○ 시험장소: 추후 별도 공고

○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 여자 6명, 남자 12명

구분(직종)	시험과목 및 문항	시험시간	비 고
청원경찰	- 일반상식(한국사 포함) 20문항 - 민간경비론 20문항	과목 구분 없이 40분 시험 실시	- 2과목 - 과목별 20문항 - 과목별 100점 만점 - 4지택1형 -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합격기준: 두 과목 점수와 가산점(붙임 1)을 합산한 총점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라. 체력시험

- 시 험 일: (예정) 2026. 11. 14.(토)
- 시험장소: 추후 별도 공고
- 체력시험 합격예정인원: 여자 4명, 남자 6명
- 시험종목: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kg)
- 합격기준: 체력시험 심사기준(붙임 2)에 따라 각 종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종목별 측정결과를 평가기준표(붙임 2)에 따라 점수로 환원
 - 종목당 10점 만점(총 30점 만점)
 - 한 종목이라도 최저점(1점)을 받은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마. 면접시험

- 시 험 일: (예정) 2026. 11. 19.(목)
- 시험장소: 추후 별도 공고
- 합격기준: 면접시험을 통하여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응용능력·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시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세부일정)

- 원서접수 : 10. 27.(화) ~ 10. 28.(수)
- 서류 합격자 및 필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 (예정) 10. 30.(금)
-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 (예정) 11. 06.(금)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시행계획 공고 : (예정) 11. 11.(수)
- 체력시험 : (예정) 11. 14.(토)
- 체력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예정) 11. 16.(월)
- 면접시험 : (예정) 11. 19.(목)
- 최종합격자 발표 : (예정) 11월 중

< 주 의 사 항 >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흥시 홈페이지 채용 및 모집정보'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보수 및 복무

-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및 「시흥시 공무원직 관리규정」,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에 따름

○ 원서접수일: 10. 27.(화) ~ 10. 28.(수) 09:00~18:00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시흥시청 본관 2층 행정과(인사팀) ※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 접수방법: 응시자 직접 방문(우편접수 및 e-mail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제출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보완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가능**

※ 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클립 이용)**

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부 (별지서식 1호)

- 응시수수료(시흥시 수입인지) 5,000원 (시흥시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 취업지원(보호) 유형 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②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1장 이내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서식 4호)

⑤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호)

⑥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주소기록 확인용이므로 주소 이력 전체 표기**

⑦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
- 제출된 증명서로 해당 경력 판단이 모호할 경우 인정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직접 확인받아 제출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⑨ 필수자격증 및 진단서

- 무도(무술)자격증 ※ (p.8) 발급 인정단체 참조
- 시력검사 진단서 ※ **안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확인서)**

⑩ 분야별 가산점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결정 이후에도 신원조회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자격 미충족이 확인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변경일정 미숙지,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은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반환 시 방문수령할 경우 별도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나, 우편 등 비용이 수반되는 방법으로 요청할 경우 구직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고 내용은 시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시정정보 > 채용 및 모집정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iheung.go.kr/main/jobInfoView2/list.do?mId=0401070000>)
- ※ 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청 행정과 인사팀(☎ 031-310-31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도(무술) 단종 발급 인정단체 현황(60개)

※ 중앙경찰학교 공고 제2026-11호 「2026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가산점 인정 무도 단체 기준(「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6)에 따름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1)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국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8)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민국합기도연합회 구)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대한킥복싱협회

※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 세계합기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무예진흥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회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붙임 1】 필기시험 가산점

○ 서류시험 가산점 (최대 11점)

※ 가산점은 필기시험 점수에만 반영하며, 이후 체력·면접시험에는 반영되지 않음

※ 자격취득과 기간산정 기준일은 모두 공고일(공고일 현재 유효)이며, 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대 11점을 넘을 수 없음

가산점 분야		구분	가산점	증빙자료(제출서류)
㉠ 취업보호 (취업지원) ※ 중복불가 (최대2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2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2점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	2점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자	2점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1점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10% 가점대상	2점	해당증명서 ※ 지방보훈청 발급
		채용시험 5% 가점대상	1점	
㉡ 다자녀가정의 부모 ※ 미성년 자녀만 해당		세 자녀 이상	2점	가족관계증명서
		두 자녀	1점	
㉢ 봉사활동시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		150시간 이상	3점	봉사활동실적증명서
		100시간 이상	2점	
		50시간 이상	1점	
㉣ 무도(무술) 단증		3단 이상	2점	단증 사본(원본지참) ※ (p.8) 발급단체 참조
		2단	1점	
㉤ 관련 자격증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응급구조사(급수 무관)	2점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사회형평 가산점 대상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공고일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유형의 대상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을 통하여 확인·발급 받아야 함

【붙임 2】 체력시험 심사기준

○ 체력시험 평가기준표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 자	100m 달리기(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 악력(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여 자	100m 달리기(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45 이상	44~41	40~37	36~33	32~29	28~25	24~21	20~17	16~13	12 이하
	좌우 악력(kg)	40 이상	39~37	36~34	33~31	30~28	27~25	24~22	21~19	18~16	15 이하

- ※ 체력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바라며, 스파이크 착용은 시험장 사정에 따라 금지
- ※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기구는 착용할 수 없음
- ※ 체력시험 합격자는 지정 병원에서 금지 약물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 100m 달리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좌우 악력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상대 악력이 아닌 절대값(측정 원점수) 반영
- ※ 당일 현장 감독관 판단에 따라 허리(요추, 경추) 등에 심한 통증이 관찰되는 경우 체력 측정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체력시험 측정기준표

종 목	측정 기준
① 100m 달리기 (초)	· 측정자세: 출발선 앞에 발의 위치를 정하고, 출발신호에 맞춰 트랙을 따라 직선으로 달린다. · 측정방법: 몸통이 결승선을 통과할 때 기록 측정 *1회 측정으로 점수 산정 ⇨ 최저 점수: 남자 17초 이후, 여자 21.6초 이후 · 무효처리: 출발선 넘어서 출발 / 출발신호 이전에 출발 / 트랙 이탈 ※ 출발신호 이전에 달린 경우: 1회에 한하여 기회 부여
② 윗몸 일으키기 (회/1분)	· 측정자세: 양발을 30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힌 채 양 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운 후, 상체를 일으킨 다음 다시 눕는다. (다시 누울 때는 깍지 낀 손 유지) · 측정방법: 누울 때와 일으킬 때 2번 모두 센서가 작동(빠-소리)할 경우 1회로 간주 * 1분간 실시(1회 측정) ⇨ 최저 점수: 남자 21회 이하, 여자 12회 이하 · 무효처리: 실시 도중 머리 뒤에 마주잡은 손을 뗄 경우, 누울 때와 일으킬 때 2번 중 한 번이라도 센서작동음이 들리지 않았을 경우
③ 좌우 악력(kg)	· 측정자세: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등과 다리를 곧게 편 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 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팔을 벌려 소리가 날 때까지 손 잡이를 잡아당긴다. · 측정방법: 1회 측정으로 점수 산정 ⇨ 응시자는 왼손 또는 오른손 선택 * 측정계 손잡이는 응시자에게 맞게 조절 가능 ⇨ 최저 점수: 측정치 남자 37 이하, 여자 15 이하 · 무효처리: 측정완료 전에 팔을 내리는 등 정해진 측정자세 이외로 측정

【붙임 3】 면접시험 평정표

2026년 제1회 시흥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표

필적 감정용 기재란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응시번호	
	위 문장을 자필로 1회 작성해 주세요			성명	한글) 한자)
생월		생일			

	평정요소	평정기준최고점수 (2점~0점)	위원평정점수
채점	가.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2	점
	나.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점
	다. 책임성, 사회성, 성실성	2	점
	라. 준법성, 품행, 예의	2	점
	마. 적극성 등 기타 발전가능성	2	점
	합계	10점	점
위원서명		(서명)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합격결정: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위원별 평정점수를 합산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2.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0” 으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0” 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3. 시험위원은 굵은선 안에만 기재